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Ⅲ
—色服의 織物을 中心으로—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A Study on the Fabrics in the Sumptuary Laws of Silla in
Sam Guk Sa Ki(三國史記)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緒 論

5) 乘天羅

II. 織物名

5. 綾

1. 罽

6. 紗

2. 繡

7. 羅

3. 錦

8. 絹

4. 羅

9. 綿紬

1) 總羅

10. 布

2) 野草羅

III. 結 論

3) 布紡羅

參考文獻

4) 越羅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to identify and to classify the fabric names concerning costume in the sumptuary laws of Silla in Sam Guk Sa Ki(三國史記).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Various names of fabrics concerning costume in the sumptuary laws of Silla were found to be classified into ten categories of fabrics.

They were as follows :

(1) *kye*(罽), (2) *Su*(繡), (3) *Kum*(錦), (4) *Ra*(羅), (5) *Reung*(綾), (6) *Sa*(紗), (7) *Si*(羅), (8) *Kyun*(絹), (9) *Myun ju*(綿紬), (10) *Po*(布)

이 論文은 1997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氈: 「廣雅, 釋器」氈, 罽也. 「廣韻」氈, 毛布.

氈字도 赤色縹名이다.

이와 같이 古代의 縹는 여러 種類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縹는 古代로부터 中國인들이愛好하고 貴重히 여겼던 織物이었다.

縹는 이마 扶餘에서도 使用되었던 織物로서 國外 旅行時에 繪繡錦縹로 만든 衣服을 입었다고 三國志 魏志 東夷傳 扶餘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新羅에서 縹가 使用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古代에 縹란 글자는 有紋과 無文, 有彩色과 無彩色, 精細한 것 粗厚한 것 등의 全部를 포함한 毛織物의 凡稱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服飾材料로서의 縹는 縹, 錦보다도 더 貴하고 新羅인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織物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衣服材料로 使用되었던 縹는 縹種類中에서도 가장 精細한 最上品의 毛織物이었을 것이라 推定된다. 新羅의 縹는 紋樣도 여러가지이고 有彩色紋樣도 있고 織物의 바탕색도 여러가지 색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新羅에서 五色縹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三國遺事 四佛山條에 “王…命工作五色氈氈 又 彫沈檀木與明珠美玉爲假山 高丈餘 置氈氈之上…”이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縹는 眞骨大等の 表衣, 半臂, 袴에 使用하는 것을 禁하였을 뿐만 아니라 眞骨女를 비롯하여 六頭品女와 五頭品女의 服飾에 使用하는 것을 두루 禁하였다.

縹는 服飾材料로 뿐만 아니라 眞骨과 眞骨女의 말안장 언치와 자리에도 使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車騎 屋舍에 의거하면 말안장 언치와 안장 자리, 簾椽 등에 縹의 使用을 禁하였다.

縹는 대단히 귀한 織物이었음에도 新羅 貴族들은 이것을 服飾材料로는 물론 다른 生活用品에도 使用하였던 것이 발견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의거하면 縹縹錦羅의 순서로서 縹가 항상 위의 순서대로 있어 縹는 縹錦보다 上位에 놓였던 織物이었음이 나타난다. 그러

므로 縹는 新羅인이 가장 선호하고 귀하게 여겼던 織物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졌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縹에 대한 해석에서 金東旭 教授는 縹를 獨立된 하나의 織物로 보지 않고 그것을 羅의 縹用으로 使用된 것으로 보았다.

縹縹錦羅, 縹縹錦野草羅, 縹縹羅, 縹羅에서 縹는 羅의 縹用으로 쓰인 재료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는 縹를 오늘날의 라샤 系統의 毛織物이나 비로드나 벨베트와 같은 털이 밖으로 일어서는 毛織物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¹⁾.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縹, 縹, 錦, 羅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翻譯本에서도 大同小異하게 이것들을 하나로 읽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北譯 三國史記에서는 다른 번역본에 비하여 그래도 織物名을 많이 떼어 읽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보이는 縹가 독립된 織物이란 증거는 眞骨女의 袂禁縹及縹用金銀絲孔雀尾者에서 볼 수 있다. 또한 三國史記 屋舍條에도 眞骨簾椽禁縹縹縹野草羅.

六頭品 簾椽禁縹縹縹野草羅. 床… 又禁縹縹
五頭品 簾椽禁縹縹縹縹縹. 와 같은 기록이 있어 縹, 縹, 錦, 羅는 別個의 織物임을 알 수 있다.

2. 縹

우리나라에서 縹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 扶餘에 보인다. 出國則尙繪縹縹縹라고 있어 扶餘에서 外國으로 出國할 때에 繪縹縹縹等을 즐겨 입었다고 한다. 扶餘인이 繪縹縹縹를 좋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馬韓人是 金銀縹縹나 縹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三國志 魏志 韓傳에 不以金銀縹縹爲珍이라 하였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에 其公會衣服皆縹縹金銀以自飾이라 하여 高句麗에서도 縹와 함께 縹는 대단히 귀히 여겼던 織物이었다.

新羅에서도 縹는 대단히 귀한 織物이었다. 招知麻立干 22年(500 A.D.)의 碧花의 說話에 그녀의 아버지가 縹縹로 만들어진 衣服을 그녀에게 입히고 色相으로 덮어서 王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1)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1979, p. 101.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繡의 사용을 禁한 것이 보인다.

中國에서는 이미 繡를 商, 周時期에 服飾에 使用하였다고 한다. 太平御覽 布帛部二錦에 太工六韜曰 夏桀殷紂之時 婦人錦繡文綺之坐 席衣以綾紈 裳 三百人이라 하였다.

繡는 五彩色絲로 紋樣이 刺繡된 織物을 일컫는다.

「說文」에 繡, 五采備也. 師古는 漢書, 賈誼傳 美者繡繡의 注에서 繡者 刺爲紈文也라고 說明하였다.

繡 또한 「集韻」에 繡, 綺, 屬이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繡는 紈와 通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繡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眞骨大等
表衣, 半臂, 袴 並禁紈繡錦羅
- 眞骨女
表衣 禁紈繡錦羅
內衣, 半臂, 袴, 襪履, 並禁紈繡錦羅
袂禁紈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 六頭品女
內衣 禁紈繡錦野草羅
半臂 禁紈繡羅總羅
袴 禁紈繡錦羅總羅
袂 禁紈繡錦羅金銀泥
裙襪, 短衣 並禁 紈繡錦羅…….
表裳 禁 紈繡錦羅…….
襪履 禁 紈繡.
內衣 禁 紈繡錦羅 野草羅.
襪 禁 紈繡錦羅…….
履 禁 紈繡錦羅 總羅.
- 五頭品女
半臂 禁 紈繡錦羅…….
袴 禁 紈繡錦羅…….
裙襪 禁 紈繡錦羅…….
短衣 禁 紈繡錦羅…….
表裳 禁 紈繡錦羅…….
襪履 禁 紈繡錦羅…….
內衣 禁 紈繡錦羅…….
襪履 禁 紈繡錦羅 總羅.

襪 禁 紈繡錦羅…….

百濟에서 繡를 사용하였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扶餘와 高句麗, 新羅에 繡가 있었으며 百濟의 衣服이 高句麗와 거의 同一하였으므로 百濟에서도 繡가 服飾에 使用되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3. 錦

錦字는 中國古代의 문헌에 나타나는 글자이다. 詩經의 國風篇에 衣錦褻衣, 裳錦褻裳, 錦衾, 錦衣狐裘 등에 錦字가 보인다.

左傳에도 重錦 束錦 美錦 匭錦 懷錦 幣錦 등의 기록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錦을 사용하였었다는 기록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扶餘에 出國則尙繪繡錦羅라고 하였다.

위의 기록으로 이미 扶餘 時代에 錦을 사용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錦은 三國時代에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도 使用되었다.

新唐書에 高句麗 王服 五采라 있고 冊府元龜에 高句麗 其公會服皆錦繡金銀以自飾이라 하였다.

唐書에 百濟王은 大袖紫袍와 青錦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新羅의 錦繡에 대한 記錄은 三國史記, 昭知 麻立干 22年(500 A.D.)의 碧花 說話에서도 보인다. 「法興王 7年(520 A.D.) 百官의 公服을 裁정하였는데 二官等인 伊浪부터 三官等인 沾漚(漚浪)까지 錦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眞德王 4年(650 A.D.)에는 五言 太平頌을 지어 무늬를 넣은 錦을 唐 高宗에게 바쳤다.

또한 文武王 卽位年(661 A.D.)의 太宗武烈王 妃인 文姬 說話에 錦裙이 보인다.

또한 景文王 9年(869)에도 大花魚牙錦, 小花魚牙錦 朝霞錦 등을 唐에 보냈다. 이러한 기록은 分明히 新羅에서 생산되었던 錦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各 階級과 品階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錦의 使用을 禁하였다.

- 眞骨大等
表衣 半臂, 袴並禁紈繡錦羅.
- 眞骨女
表衣 禁紈繡錦羅.

○六頭品女

- 內衣 禁闊繡錦野草羅.
 袴 禁闊繡錦羅總羅 金銀泥.
 袂 禁闊繡錦羅 金銀泥.
 褙襦, 短衣並禁闊繡錦羅 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表裳 禁闊繡錦羅總羅 野草羅.
 內裳 禁闊繡錦羅 野草羅.
 襪 禁闊繡錦羅 總羅 野草羅.
 履 禁闊繡錦羅 總羅.

○五頭品女

- 半臂 禁闊繡錦 野草羅 總羅.
 袴 禁闊繡錦羅總羅 野草羅 金銀泥.
 褙襦 禁闊繡錦 野草羅 布紡羅 金銀泥 纈縵.
 短衣 禁闊繡錦 野草羅 布紡羅 總羅 金銀泥 纈縵.
 表裳 禁闊繡錦野草羅 總羅 金銀泥 纈縵.
 褙襦 禁闊繡錦羅.
 內裳 禁闊繡錦 野草羅 金銀泥 纈縵.
 襪 禁闊繡錦羅 總羅.
 履 禁闊繡錦羅 總羅 野草羅.

이상의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錦의 禁制를 보면 男子에게는 眞骨大等の 表衣, 半臂, 袴에 錦의 使用을 禁한 것이 보일 뿐 六頭品 以下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錦은 興德王 服飾禁制 以前에도 眞骨大等 以上の 服飾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된다.

反面에 女子服飾에서 錦은 五頭品女 以上에서만 언급되었다. 이 기록을 해석한다면 服飾禁制 以前에도 錦은 五頭品女 이상의 服飾에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錦에 대한 中國 문헌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錦에 대하여 「說文」에 錦, 襄色 織文也. 說文通訓定聲에 梁絲織之, 成文章也. 「釋名釋采帛」에 錦, 金也, 作之用工重, 其價如金, 故其制字從帛與金也. 「急就篇法」에 錦, 織綵爲文也.

襄, 雜色也, 漢魏郡有縣, 能織, 錦綺, 因名襄色. 「說文」의 襄色의 色字를 邑字의 잘못된 글자로 보고 色字 대신 邑字를 쓴 기록도 많다.

詩衛風 衣錦 芻衣「傳」錦, 文衣也. 「拾遺記」에 貝嶠山有山冰 芻, 霜覆之, 然候成蘭, 其色五采,

後代效之, 染五色絲, 織以爲錦.

錦은 多色糸로 文樣을 넣어 靚 多重織物이다. 卽 現代에 緞子織이라고 부르는 직물로서 두터운 바닥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唐錦에는 經錦과 緯錦의 구별이 있었는데 經錦은 漢魏 以來의 傳統의 技法이었고 緯錦은 唐代의 새로운 製造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新羅의 錦이 이 두가지 錦 가운데 어느 錦이었는지 확실하 알 수 없다.

襄邑은 錦綺의 名産地였다.

襄邑은 漢代의 陳留郡에 속하여 있었던 곳으로서 河南省 睢縣西에 해당되는 곳이다.

4. 羅

三國史記 色服 車騎 屋舍에 依하면, 羅는 新羅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織物로 나타난다. 服飾材料로는 男子에게는 六頭品과 五頭品の 幘頭에 使用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六頭品은 幘頭에 總羅, 五頭品은 羅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眞骨大等の 幘頭는 任意로 되어 있으므로 眞骨大等도 頭하면 總羅나 羅를 幘頭 材料로 使用하였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羅는 眞骨大等の 表衣, 半臂, 袴에 使用하지 못하도록 禁止되었다.

女子에게 羅는 興德王 服飾禁制 以前에는 男子에게 보다 널리 使用되었던 服飾 材料였음을 알 수 있다.

興德王 服飾 禁制에서는 眞骨女의 表衣, 內衣, 半臂, 袴, 襪, 履에 羅의 使用을 禁하였다.

六頭品女는 內衣에 野草羅를 禁하였고 半臂와 袴에 羅, 總羅를 禁하였고 袂에 羅를 禁하였다. 褙, 褙, 短衣에 羅, 布紡羅, 野草羅를 禁하였고 表裳에 羅, 總羅, 野草羅를 禁하였고 內裳에 羅, 野草羅를 禁하였다.

襪에 羅, 總羅를 禁하였고 履에 羅, 總羅, 野草羅를 禁하였다.

履에 羅, 總羅를 禁하였다.

冠에 總羅를 使用하도록 하였다.

五頭品女는

半臂에 野草羅, 總羅를 禁하였고 袴에 羅, 總羅, 野草羅를 禁하였고 褙, 褙에 野草羅, 布紡羅를 禁하였다. 短衣에 野草羅, 布紡羅, 總羅를 禁하였고 表裳에 野草羅, 總羅를 禁하였으며 褙襦

에 羅를 禁하였다.

內裝에 野草羅를 禁하였고 襪襖에 羅, 縵羅를 禁하였으며 襪에 羅, 縵羅, 野草羅를 禁하였다.

四頭品女는 襪에 越羅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帶에 野草羅, 乘天羅, 越羅를 禁하였다.

위의 禁制에 의하면 縵羅는 六頭品 男子의 幘頭와 六頭品女의 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新羅에서 冠을 쓸 수 있었던 女子는 六頭品 以上이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여러 가지 羅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定한 것이고 위에서 言及한 六頭品과 五頭品의 幘頭와 六頭品女의 冠을 除外하고는 四頭品女의 襪에 越羅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唯一한 羅의 사용에 대한 허용이다.

織物名으로서의 羅에 대한 것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다.

「淮南子, 齊俗訓」弱縵羅紈. 「注」羅, 縵. 「楚辭, 宋玉, 招魂」羅, 縵張些 「注」羅, 綺屬也. 「類篇」帛. 「廣雅, 釋器」絹.

羅는 縵이라 하였으므로 縵의 뜻을 찾아 보면 「說文」에 細縵이라 하였다. 「增韻」에 縵曰 縵, 紡絲而織之.

即 羅는 縵, 綺屬, 文, 疏羅, 帛, 絹이라 하였지만 위의 說明만으로는 羅가 어떤 織物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縵이 어떤 織物이었는지 기록을 찾아 보기로 한다.

縵에 대하여는 說文에 縵, 細縵也. 說文 通訓定聲에도 縵, 細縵也. 按今之 縵紗也라고 하였다. 增韻에 縵, 縵紗曰縵, 紡絲而織之라고 하였다. 「漢書, 江充傳」充衣紗縵禪衣. 「注」에 紗縵, 紡絲而織之也, 輕者爲紗, 縵者爲縵. 「後漢書, 章帝紀」詔齊相省冰 紈方空縵. 「注」縵, 紗也. 「釋名」縵, 粟也. 其形戚戚如也.

說文에 縵을 細縵이라고 說明하였는데 縵의 뜻을 보면 白色細絹을 의미한다. 說文에 縵, 白鮮紈라고 하였다. 「儀禮 聘禮」賄用束紡 「注」에 紡, 紡絲爲之, 今之縵也. 「疏」에 紡絲爲之者, 因名此物爲紡. 鄭注周禮內司服, 亦云素紗者, 今之白縵也, 則此束紡者, 素紗也.

紡은 紡絲로 紗縵之屬인데 漢代의 縵이며 周禮에 보이는 素紗인 것이다. 即 素紗는 漢代의 白縵

인 것이다.

即 縵은 細縵으로서 紡絲로서 織造한 것이며 輕者를 紗라 하고 縵者를 縵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羅縵紗는 모두 紡絲로 織인데 縵紗를 縵이라 하고 輕者를 紗라고 했던 것이다. 羅, 縵, 紗는 다음 기록에서 좀더 잘 알 수 있다.

縵은 一切經音義 卷 20에 說文, 細縵也 卷 36에 羅, 縵也. 絹之疎者也, 卷 39에 釋名云, 縵紗縵也 卷 45에 似羅而疎, 似紗而密者也, 有縵縵縵, 言細如縵也 또한 卷 48에도 似羅而疎, 似紗而密, 古有縵縵 縵, 言細如縵也라고 卷 45와 거의 同一한 기록이 보인다. 卷 88에는 釋名云, 縵紗也, 「說文」羅屬也라고 說明하였다.

위의 一切經音義의 說明에 의하면 羅는 疎絹으로서 縵, 紗와 비슷하지만 그 疎密에 차이가 있는데 羅는 縵보다 촘촘하고 縵은 紗보다 촘촘하다. 이 說明은 「說文」의 縵, 羅屬이란 說明과 같다.

羅가 綺屬이라 說明되어 있는 것은 文綺라는 意味에서 일 것이다.

新羅의 羅는 그 명칭이 사용된 재료, 문양, 직조방법 등에 따라서 붙여진 것으로 나타난다. 色彩別에 따라서 붙여진 것으로 나타난다. 色彩別에 따른 羅의 구분은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色彩에 따른 羅의 명칭은 紫羅縵袍, 五色羅縵 등은 聖德王에게 보낸 唐玄宗의 下賜品에 보인다. 新羅의 羅名은 高句麗의 羅가 색깔에 따라서 白羅, 紫羅, 靑羅, 綺羅 등으로 기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新羅의 羅의 種類를 分類함에 있어서 李如星의 朝鮮服飾考를 비롯하여 大部分의 服飾史 관련 서적이나 사전, 또는 번역 三國史記 등에서는 羅를 錦羅, 縵羅 또는 縵縵羅 등으로 分類하였다.

그러나 三國史記 色服의 羅를 위와 같이 分類한다는 것은 無理이다. 縵, 縵, 錦, 羅는 모두 別個의 織物名이다.

縵와 縵가 別個의 織物이란 것은 眞骨女의 袂禁 縵及縵에서 自明하다. 또한 六頭品女의 襪禁 縵縵羅에서도 縵와 縵는 別個의 織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錦이 羅와 別個의 織物이란 것은 眞骨女의 內衣, 半臂, 袴, 襪, 履並禁 縵, 縵, 羅이다. 또한 六頭品女 內衣禁 縵, 縵, 錦, 野草羅이고 六頭品女의 半臂禁 縵, 縵, 縵羅에서도

분명하다.

團과 繡, 錦과 羅, 麤, 縹, 羅가 각각 別個의 織物인 예는 三國史記 雜誌 屋舍條에서도 確認된다.

○六頭品女

襖褙禁團, 縹, 襖褙褙禁團, 羅 縹羅.

○五頭品

幘頭用羅, 縹, 絹, 布.

車騎

○眞骨女

鞞鞞鞍坐子禁團, 羅.

○五頭品女

鞞鞞鞍坐子 禁團, 縹, 錦, 綾, 羅, 虎皮.

處舍

○眞骨

簾緣禁錦, 麤, 縹, 野草羅, 屏風禁縹.

○六頭品

簾緣禁 團, 縹, 綾, 屏風禁縹.

○五頭品

簾緣禁錦, 麤, 綾, 絹, 縹.

1) 縹羅

천이 가늘고 성긴 것을 縹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縹羅는 가늘고 성긴 羅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六頭品 男子의 幘頭에 縹羅의 使用이 禁止되었다. 女子에게는 六頭品女의 半臂, 袴, 表裳, 襖褙, 襖, 履, 冠에 縹羅의 使用이 禁止되었다.

또한 五頭品女의 半臂, 袴, 短衣, 表裳, 襖褙, 襖에 縹羅의 使用이 禁止되었다.

服飾禁止에서 보면 六頭品 男子의 幘頭에 縹羅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眞骨大等の 幘頭의 材料는 任意라고 定하였으므로 服飾禁制 이후에도 縹羅는 眞骨大等の 幘頭 材料로 使用되었으리라 해석된다.

興德王 服飾禁制 以前까지 縹羅는 六頭品과 五頭品 女子의 服飾 材料로 널리 使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四頭品女나 平人女의 服飾에는 縹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縹羅는 新羅時代의 高級織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野草羅

이 말의 意味 그대로 野草 무늬가 있는 羅일 것

이다. 紋樣은 織紋일 것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野草羅는 男子의 服飾에는 言及되고 있지 않았다. 野草羅는 主로 女子의 服飾에 言及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六頭品女에서 부터 四頭品女의 服飾에 野草羅의 使用을 禁하였다. 六頭品女의 內衣, 袴, 襖, 短衣, 表裳, 內裳, 襖에 野草羅의 使用을 禁하였다. 六頭品女 表衣 只用中小文綾縹相이라 하였으므로 表衣에도 野草羅의 使用은 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六頭品餘의 服飾가운데 半臂, 袴, 袴, 襖褙, 帶, 襖褙에는 野草羅의 禁止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眞骨女의 服飾에도 野草羅에 대한 禁止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五頭品女의 服飾에서 半臂, 袴, 袴, 襖, 短衣, 表裳, 內裳, 襖에 野草羅의 使用禁止 조항이 있다. 이 밖에 表衣, 內衣, 袴는 각각 表衣只用無文獨織, 內衣, 只用小文綾, 袴 綾相已下.라고 하여 野草羅는 使用이 禁止되었다는 것이 발견된다.

四頭品女의 服飾에서 野草羅는 帶에만 그 使用을 禁한 조항이 보인다. 다른 服飾 項目에서는 特別한 織物만을 使用하도록 定하였으므로 野草羅는 四頭品女의 모든 服飾에 使用하는 것이 禁止된 것이 발견된다.

四頭品女의 帶에 野草羅의 使用이 禁止된 것과 五頭品女와 六頭品女의 帶에는 野草羅의 禁止사항이 없는 것, 眞骨女의 帶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五頭品女 以上은 野草羅를 帶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眞骨女의 帶에는 무슨 재료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野草羅는 服飾 외에도 簾緣에도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卷 33, 雜誌 第2 屋舍에 眞骨의 簾緣에 錦團縹 野草羅의 使用이 禁止되었다.

3) 布紡羅

布紡羅는 興德王 服飾禁止에서 六頭品女의 袴褙, 短衣에 禁하였고 五頭品女의 袴, 襖, 短衣에 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布紡羅가 어떤 羅인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 먼저 이 글자부터 보기로 한다. 布紡羅에서 앞에 있는 布字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桑織의 意味는

아닌 것이다. 또한 위에서의 布字는 織物의 總稱도 아닌 것이다. 織物의 總稱을 意味할 때 布字는 麻布, 紵布, 綿布와 같이 단어의 語尾에 놓여야 한다. 위의 布字는 織物名이나 織物의 總稱이란 意味로는 布紡羅의 理解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布字는 「小爾雅」에 麻紵葛曰布, 布, 通名也라고 解説되어 있다.

紡字의 뜻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에 紡, 紡絲也. 「儀禮聘禮」賄用束紡 「注」紡, 紡絲爲之, 今之縛也. 「疏」紡絲爲之者, 因名此物爲紡, 鄭注周禮司服, 亦云素紗者, 今之曰縹也, 則此束紡者, 素紗也.

即 紡의 한가지 뜻은 縛 卽 素絲라고 하는 織物이다. 紗의 뜻은 앞에서 紗項에서 이미 다룬 것이지만 간단히 說明하면 紡絲로 織造된 輕縵을 紗라고 한다. 그러므로 素紗는 白紗이다.

紡字는 績紡의 뜻이 있다. 急就篇註에 謂紡切麻絲之屬爲縹縹也. 「左傳昭十九年」託干紀鄆紡焉. 「疏」紡謂紡麻作縹也.

그러므로 布紡羅는 麻苧葛과 같은 麻屬의 紡絲로 織造한 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縛 卽 素紗는 白紗이므로 新羅의 布紡羅는 苧麻를 使用하여 그 특징이 白色인 것에 있었을 것이다.

天馬塚 발굴 遺物 가운데는 鞍褥가 있는데 그 鞍褥는 여러 겹으로 누웠는데 그 누빈 가운데가 方紡羅로 되어 있다고 한다²⁾.

4) 越羅

越羅는 興德王 服飾禁制에 四頭品女의 褻用越羅, 帶禁縹組及 野草羅 乘天羅 越羅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四頭品女의 褻에는 越羅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해석하면 興德王 服飾禁制 頌布 以後에도 四頭品女 以上, 女子의 褻과 五頭品女 以上 女子의 帶에는 越羅를 使用할 수 있다는 意味가 된다.

越羅는 그 質과 價値가 野草羅나 乘天羅보다 떨어지는 것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越羅가 무엇이나에 대하여 北譯 三國史記에서는 未詳의 것으로 譯라라고 글자 끊대로 옮겨 놓았다³⁾. 다른 翻譯本에서도 越羅라고만 글자 끊대로 옮겼다. 三國史記 주석에서만 越羅의 '越'字를 부들자리의 뜻으로 보고 越羅를 '활라'라고 읽었으며 越羅를 부들자리 무늬가 있는 얇은 비단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추정하였다⁴⁾.

越羅, 越葛, 越布와 같은 말이 있고 越羅 蜀錦이란 말도 있다. 越羅, 越葛, 越布는 古越國 卽 今 浙江省 地方 所産의 羅, 葛, 布를 意味한다. 越國과 蜀國은 古代로 부터 각각 羅와 錦의 名産으로 有名하여 越羅蜀錦이란 말이 생겼을 程度였었다. 「杜甫, 白絲行」에 綠絲須長不須白, 越羅蜀錦金粟尺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越字는 産地와 관계 있는 의미로 說明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越字는 땅이름 또는 나라 이름의 織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뜻이 있다. 康熙字典에서는 越字를 布名이라 說明하였으며 中文大辭典에서는 白越의 說明에서 細布라고 해석하였다. 康熙字典과 中文大辭典의 典據는 둘다 「後漢書 明德 馬后傳」 賜語貴人白越 三千端. 「注」白越 越布에 있다.

「文選, 左思, 吳都賦」에 蕉葛斤越, 弱於羅紵. 「注」에 銑曰, 蕉葛斤越, 皆布類라고 하였다.

初刊 內訓 2上 48에도 '白越은 풀로 나흔비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說明만으로는 白越의 材料인 풀이 무슨 풀인지는 알 수가 없다.

「才物譜, 布帛」에 越, 蕉苧織布, 漢馬后傳白越이라 있다. 이 記事는 짧지만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越은 蕉布 卽 芭蕉布이다. 그러므로 越羅는 蕉麻의 纖維로 織造한 羅 卽 蕉羅 또는 芭蕉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越羅는 banana 섬유로 織造한 羅인 것이다.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越羅는 越地

2) 天馬塚 發掘 調査 報告書, "발굴유물의 보존 및 과학적 고찰-유물에 대한 실험 결과의 고찰",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74, pp. 240-245.

3) 北譯 三國史記, 下, 1958, p. 143.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三國史記 4, 주석편(하), 1997, p. 122.

所産인 越羅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芭蕉 섬유를 재료로하여 織造한 越羅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越羅, 越布를 越地나 越國으로만 국한시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織物 材料와 관련된 織物名이라고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越布, 越羅라고만 지칭되어온 織物의 材料가 무엇인지 규명된 것만도 큰 행운이라 생각된다.

5) 乘天羅

乘天羅는 羅의 紋樣이 乘天이라서 붙여진 이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乘天이란 말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紋樣인지 確認하기 어렵다. 中文大辭典에 乘天은 承天이라고만 있다. [例示된 例文은 紋樣의 意味가 아니다.] 承天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받는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뜻은 紋樣과는 관련이 없다. 紋樣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承天의 뜻에는 中國唐代的 宮城南面中央之門이란 의미와 唐代舞蹈之一種의 의미가 있다. 乘天의 辭典的 意味로는 만약에 新羅의 乘天羅가 新羅産品이었다면 唐나라의 宮城門이나 舞蹈紋이나 또는 이것들과 상응되는 紋樣이었을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혹시 唐代에 承天舞란 춤이 有名하여서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나 또는 宮城門을 織物紋樣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위의 두 가능성 중에서 춤추는 사람의 모습의 紋樣이 乘天羅의 紋樣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推定은 中國의 古代織物에서 아주 드물지만 춤추는 人物紋樣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에 연유되는 것이다.

中國에서 織物紋樣으로 舞蹈人物이 사용된 예는 이미 戰國時代의 織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82年 湖北 馬山 一號墓 出土의 三色 錦에는 龍, 鳳, 麒麟과 舞蹈人物로 組成되어 있는데 춤추는 人物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각각 두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춤을 추고 있다. 옷은 발목 약간 위까지 오는 옷에 소매는 아주 좁고 소매는 아주 긴데 손 끝에서 한삼같이 길게 더 나갔고 소매 끝은 더 넓게 퍼졌다.

乘天羅라는 것이 唐나라 産品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新羅産이었다면 新羅에서도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 있는 羅가 있어서 그것을 乘天羅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乘天이

란 말의 意味에서 유추하여 본 乘天羅에 대한 해석이다.

만약 乘天의 乘字와 天字를 각각 떼어서 그 뜻을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은 추정도 가능하다.

乘字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乘天羅와 관련이 있을 것같은 意味를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物雙의 뜻이 있다. 「廣雅, 釋詁四」에 乘, 二也. 「方言」에 雙隔曰乘이라 하였다.
2. 物四의 뜻이 있다. 「方言, 六」에 四雁曰乘이라 하였다.
3. 草名의 뜻이 있다. 「爾雅 釋草」에 望乘車. 「注」可爲索, 長丈餘라 하였다.

위의 뜻 가운데서 乘天羅의 紋樣에 사용되었을 것 같은 紋樣은 아마도 雙隔이 창공을 나는 紋樣이었을 것이다. 中國의 古代 織物紋樣 中에는 禽獸나 人物 또는 그외의 다른 物件을 雙으로 使用한 예가 흔하다고 한다.

5. 綾

綾의 뜻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다. 「說文」에 綾, 東齊謂布帛之細者曰綾이라 하였다.

釋名 釋采帛에는 綾, 凌也, 其文望之如冰凌之理也. 正字通에 綾織素爲文者曰綺, 光如鏡面有花卉狀者曰綾.

玉篇에는 綾, 文縉이라 하였다.

即 綾은 布帛之細者, 文縉의 뜻이 있다. 綺와 綾이 文縉이란 點은 같으나 이 두 織物의 表面이 다르다. 綾은 거울 표면 같으며 花卉狀 무늬가 있는 것이고 綺의 表面은 綾과 다르다.

또한 綾과 綺의 差異는 綾이 綺에 比하여 더 섬세하다.

一切經音義 卷 66에는 張揖의 埤蒼을 引用하여 埤蒼云, 綾似綺而細也라고 綾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內容은 顧野王之 玉篇에도 있다. 倭名類聚抄에 野王案, 綾似綺而細者也라 있다. 綾은 現代語로 표현하면 silk damask로서 satin 表面에 紋樣은 바탕보다 들어간 직물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綾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眞骨大等機任用綾已下.

- 六頭品 內衣只用小文綾縹絹布
 五頭品 內衣半臂只用小文綾縹絹布
 六頭品女表衣只用中小文綾縹絹
 五頭品女表衣只用無文獨織
 內衣只用小文綾
 襪用綾絹已下
 四頭品女內衣只用小文綾已下
 裙襠只用綾已下
 襪只用小文綾已下
 襪襦只用小文綾縹綿紬布
 平人女 襪只用綾已下
 帶只用綾絹已下
 襪襦用 無文

綾의 種類는 興德王 服飾禁制에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綾의 種類는 中小文綾, 小文綾, 無文, 獨織 등의 기록이 보이고 아무 說明없이綾字만 보일 때도 있다. 車騎新羅에는 眞骨의 坐子에 細錦 一色綾已下를 쓰도록 하고 있어 多彩色綾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小文綾과 獨織綾(唐書 車服志)은 唐나라에도 있었던綾이다. 新羅의 小文綾이나 獨織綾은 아마도 唐나라 産이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다.

無文綾과 獨織綾은 五頭品女의 表衣에만 있는데 無文綾은 뜻 그대로 紋樣이 없는綾일 것이겠지만 唐書의 地理志의 記錄을 보면 雙絲綾 單絲綾 등이 있다.

無文綾이라도 雙絲와 單絲로 짤때는綾의 綾모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獨織은 獨(동물 이름) 織紋이 있는綾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五頭品女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動物文綾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單獨紋이 織造된綾이 아닐까 추측된다. 혹시 獨織綾은 獨窠綾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唐書 地理志에 獨窠綾, 兩窠綾, 四窠綾 등의 이름이 보인다.

獨織綾은 唐書 車服志에도 나타나는 이름이다. 新羅의 獨織綾이 新羅産이겠지만 同一織物名은 唐나라에도 있었던 것이다.

6. 紗

興德王 服飾禁制에 紗는 단지 六頭品女의 冠材料로 縹羅 紗絹을 사용하도록 한 것과 四頭品의 幘頭의 材料로 紗縹絹布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만 발견되는織物이다.

紗는 이미 中國古代부터 사용되었던織物이다. 「漢書, 江充傳」에 充衣紗縹禪衣「注」紗縹紡絲而織之也, 輕者爲紗, 縹者爲縹이라고 있다. 中國 湖南長沙 馬王堆 1号 漢墓 出土의 素紗禪衣 實物이 있다. 이 옷은 길이가 1.6 m이고 通袖의 길이가 1.95 m인데 중량은 48 g 밖에 되지 않아서 中國 漢代의 紗가 얼마나 가벼운 직물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紗는 輕縹이므로 옷감으로는 여름 옷감으로 적합한 감이다.

新羅에서 紗는 品階가 있었던 男女의 冠 材料로 쓰였던 것으로 발견될 뿐 衣服이나 그외의 복식 재료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新羅 服飾 材料에서 紗의 위치를 검토해 보면 紗는 羅 아래 階에 놓인 직물이었다. 그 예는 六頭品女의 冠用縹羅紗絹이라 하였다. 또한 五頭品의 幘頭用羅縹絹布라고 하였는데 비하여 四頭品 幘頭只用紗縹絹布라고 하여 五頭品과 四頭品 幘頭 材料의 차이는 五頭品은 羅, 四頭品은 紗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있었고 縹, 絹, 布는 五頭品과 四頭品 幘頭に 共通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伽耶에서도 紗가 사용되었다. 梁山 夫婦塚에서 紗帽殘缺이 出土된 것이다⁵⁾.

7. 縹

縹는 布와 비슷한 縹의 명칭이다. 縹는 거칠고 성긴 비단으로 縹와 同一한 것이다. 玉篇이나 字典에서는 縹를 綿紬라고도 說明하였다.

그러나 縹가 綿紬란 해석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縹에는 적용되기 곤란하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縹와 綿紬는 同一衣服 項目에 記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服飾品目에도 縹와 綿紬가 각각 따로 나타난다. 따라서 新羅의 縹와 綿紬는 同一織物이 아니고 각기 다른織物인 것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各 階級別 服飾을 분석해 보면 縹는 絹보다 한 단계 위이고 絹은 綿紬보다 한 단계 위에 속했던織物로 나타난다. 위에서부터 縹絹棉紬의 순서이다. 이것의 예는 四頭品 男

5) 梁山夫婦塚及其遺物, 1927, pp. 39-43.

자의 內衣, 半臂只用 絁絹綿紬布와 平人女의 內衣只用 絁絹綿紬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絁는 紗 아래에 놓인 직물이었다.

四頭品 男子의 幬頭只用 紗絁絹布에서 絁와 紗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新羅의 絁는 錦紬가 아니고 絹似布의 뜻이다. 玉篇에 纒, 粗細經緯不同者라 하여 絁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卽 絁는 綿紬보다 더 가는 실로 직조되어서 더 얇은 것이고 綿紬는 더 굵은 실로 짜여진 大絲絹으로서 絁보다는 더 두터운 絹인 것이다.

8. 絹

絹은 絹之通稱의 뜻이 있고 麥稍色의 두껍고 성기게 짜여진 繪名의 의미가 있는데 興德王 服飾禁制의 階級別 服飾材料로 나타나는 絹은 繪名이다.

「說文」에 絹, 絹如 麥稍.

「說文 通訓定聲」에 謂蠶厚之絲爲之, 按生帛曰絹, 與縛略同. 「廣雅, 釋器」絹, 謂之絹.

「廣韻」 練也.

「說文」의 絹은 麥稍卽 麥莖色絹이라고 說明하였다. 卽 絹은 보리 줄기와 같은 微黃色 絹이다. 絹이 어떤 비단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다른 說明이 있는데 絹의 意味에도 (1) 生絲 (2) 絹 (3) 素 (4) 綺屬 (5) 霧絹 卽 薄縑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廣雅, 釋器」의 絹를 絹이라고 한다는 말은 絹의 여러 의미 가운데서 어느 것이 絹이란 의미인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廣韻」에서 絹을 練이라고 說明하였다. 練의 唐 時代의 絹이란 織物名은 卽 古代의 練이라는 織物名이었다.

9. 綿 紬

綿紬는 懸綱라고도 쓰는데 고치를 물에 담가 끊이면서 실을 뽑은 粗絲로 紡織한 綱이다. 綱는 紬이다. 紬는 大絲絹이다.

현재 우리가 소위 明紬라고 하는 것이 綿紬이다. 明紬란 말은 綿紬의 訛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綿紬는 男子의 경우 六頭品 男子의 表衣, 袴, 襪, 五頭品 男子의 袴, 襪, 四頭品 男子의 內衣, 半臂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女子

의 경우 四頭品女의 表衣, 帶, 襪, 平人女의 表衣, 內衣 등에 綿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禁制에서 보면 綿紬는 六頭品 男子의 表衣로만 綿紬를 사용하도록 하고 五頭品 男子와 四頭品 男子의 表衣에는 布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10. 布

興德王 服飾禁制에 의거하면 布는 新羅에서 가장 보편적인 織物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眞骨大 等에서 平人女에 이르기까지 모두 使用한 직물이었는데 다만 布의 斤數로서 階級 品階와 男女의 차이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階級과 品階가 높을수록 布의 斤數가 높으며 男女間에 있어서 同階級 同品階間이라도 女子의 布의 斤數가 男子 것보다 높았다. 더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六頭品 男子의 表衣只用 綿紬紬布란 本文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本文의 紬布란 말은 本文의 앞뒤를 보아서 앞에 있는 綿紬의 紬字를 記錄者의 不注意로 한 번 더 썼을 것으로 믿어진다. 아니면 紬布의 誤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布의 斤數를 用 18斤已下라고 明記하였는데 紬布란 말은 意味가 없다. 그러므로 六頭品 只用 綿紬紬布는 六頭品 只用 綿紬布로 수정되어야 한다.

1) 階級別 性別 布의 斤數 使用에 대한 規定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 가운데에는 布의 斤數에 대한 規定이 보이는데 이 規定은 男女 共通으로 있으며 眞骨에서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 전부 있다.

布에 대한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大等 布用二十六升 已下

○眞骨女 布用二十八升 已下

○六頭品 布用十八升 已下

○六頭品女 布用二十五升 已下

○五頭品 布用十五升 已下

○五頭品女 布用二十升 已下

- 四頭品 布用十三升 已下
- 四頭品女 布用十八升 已下
- 平人 布用十二升 已下
- 平人女 布用十五升 已下

新羅 織物의 升數에 대한 기록은 興德王 服飾禁制 외에도⁶⁾ 景文王 9年 唐에 보낸 謝恩兼進奉品에도 四十升 白氈布 四十匹 三十升 紵衫段 四十匹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⁷⁾.

布는 織物의 總稱이기도 하지만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보이는 布의 升數에 관한 記錄의 布의 意味는 織物의 總稱은 아니다. 布는 麻紵葛의 通名이다. 古代에는 오늘날의 木綿은 없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新羅布의 升數는 現在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 升數와는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28升布란 現在는 팔 수 없는 가는 베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5年(665) 條에 絹布 舊以十尋 爲一匹改以長七步, 廣二尺爲一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新羅 文武王 代에 絹布의 廣은 二尺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羅에서 東魏尺을 사용하였는지 唐尺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당시의 尺이 東魏尺이었는지 唐尺이었는지 현재의 尺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見解가 있는데⁸⁾ 그것을 현재의 曲尺으로 보면 尺은 0.30303 m가 된다. 따라서 絹布의 廣 卽 1幅은 약 60 cm 가량 된다.

현재의 布幅 약 30~35 cm와 비교하면 약 2배에 가깝다. 그렇다면 眞骨女의 28升은 대략 현재의 14~5升 정도 되고 平人의 12升은 대략 6~7升 정도 된다.

故 金東旭 教授는 당시에 魏尺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幅을 48.24 cm로 환산하여 眞骨大等의 26升을 현재의 18升 정도, 平人의 12升을 8~9升 정도로 보고 이는 그리 精密한 升數도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⁹⁾.

布의 升數가 18升이라면 매우 가는 것이다. 현재 8~9升도 치녀가 시집갈 때 신랑 道袍베로 준비할 정도의 가는 升數이다.

布의 升數는 높을수록 布가 가늘고 고급품이다. 布의 1升은 經糸 80縷(또는 總)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만약 15升布라면 布 1幅의 經糸數는 1200 縷이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보면 布는 眞骨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男女 모두에게 사용되었던 織物이다. 布의 升數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階級과 男女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階級이 높을수록 布의 升數가 높고 女子가 男子보다 높은 升數의 布를 使用하였다. 즉 布의 섬세함과 粗疏함은 階級의 上下, 性差에 따라 다른데 布의 升數의 많고 적음도 階級과 性 구별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織物을 그 貴重度에 따라서 가장 貴重한 것부터 그 順位를 찾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1) 罽 (2) 縵 (3) 錦 (4) 羅 (5) 綾 (6) 紗 (7) 施 (8) 絹 (9) 綿紬 (10) 布

以上の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織物의 貴重度는 唐制와 거의 同一하여 新羅에서 唐制를 따랐음을 보여준다. 卽 唐六典 卷 22 織采署條에 다음과 같이 하였다.

一曰布, 二曰絹, 三曰施, 三曰紗, 五曰綾, 六曰羅, 七曰錦, 八曰綺, 九曰縵, 十曰縵.

위의 順序는 제일 덜 귀한 것부터 제일 귀한 것 순서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唐制와 興德王 服飾禁制의 新羅織物의 貴重度를 순서대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唐制(唐六典)	新羅(興德王 服飾禁制)
1. 布	1. 布
2. 絹	2. 綿紬
3. 施	3. 絹
4. 紗	4. 施

6) 三國史記 卷 第十一.

7) 新羅本紀 第十一 景文王條.

8) 金正基,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 研究, 三佛 金元龍 教授 停年退任記念 論叢 II, 1987, pp. 101-102.

9)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1979, pp. 102-103.

5. 綾	5. 紗
6. 羅	6. 綾
7. 錦	7. 羅
8. 綺	8. 錦
9. 絹	9. 縹
10. 褐	10. 縹

위에서 唐制와 新羅制를 비교하여 보면 新羅制는 1~10에서 2에 綿紬가 하나 더 있는 것과 唐制 9의 縹이 없을 뿐이다.

Ⅲ. 結 論

이상과 같이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織物名을 해독하고 分類한 結果를 要約하면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縹
2. 縹
3. 錦
4. 羅
 - (1) 縹羅
 - (2) 野草羅
 - (3) 布紡羅
 - (4) 越羅
 - (5) 乘天羅
5. 綾
 - (1) 中小文綾
 - (2) 小文綾
 - (3) 無文
 - (4) 獨織
6. 紗
7. 縹
8. 絹
9. 綿紬
10. 布

이상과 같이 織物名은 크게 10種類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羅 種類가 제일 많았다.

織物의 貴重度는 가장 귀중한 것부터 (1) 縹 (2) 縹 (3) 錦 (4) 羅 (5) 綾 (6) 紗 (7) 縹 (8) 絹 (9) 綿紬 (10) 布의 順序로 발견되었다.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의 各階級과 品階에 따

른 織物 貴重度의 順序는 대체로 唐制를 참조하여 制定된 것으로 나타났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織物을 使用된 材料別로 分類하면 毛織物, 絹織物, 麻織物로 나눌 수 있다. 織物 種類로는 絹織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參考文獻

- 嘉禮都監 儀軌
廣解 大王篇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院, 1963.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出版社, 1979.
金富弼,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會刊.
金富弼,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大洋書籍, 1972.
김부식,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옮김, 北譯三國史記, 서울:신서원, 1959.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을유문화사 1983. 1997 개정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서울:民文庫, 1988.
尙方定例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0.
李喜煥 纂, 物譜.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韓國史 學論叢, 1960, pp. 95-104.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기념사업회, 1974.
李宰, 四禮便覽.
才物譜.
홍매경, 홍무경, 조선의복, 혼인제도의 연구, 서울, 乙酉文化社, 1948.
康熙字典
高承, 事物紀原集類. 台北:新興書局 中華民國 58年.
王宇清, 韓國服裝史綱, 台北:中華大典編印會, 1969.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64.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 妝飾, 台北:南天書局,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 1983.
- 中文大辭典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 台北: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民國 75 年.
- 張其昀 監修, 程光裕, 徐聖鑣 主編, 中國歷史 地圖 上下, 台北: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 太平御覽, 台灣:商務印書館.
- 原田淑人, 唐代の 服飾, 東京:東洋文庫, 昭和 45.
-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の 風俗關係 資料 撮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